

▶特輯—壬午軍亂 110周年紀念、壬午軍亂을 해부한다

壬午軍亂 때 美國의 大韓政策은 어떠한 것이었나

金 源 模

(檀國大 史學科 教授)

머리말

임오군란은 朝美條約이 체결된 지(1882년 5월 22일) 2개월만에 발생한 일종의 쿠데타였다(1882년 7월 23일~24일). 조미조약체결로 조선은 명실공히 개항을 이룩했지만, 閔氏戚族세력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와 大院君을 중심으로 한 수구파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정치적·사회적 혼란은 심화되어 갔다. 비록 조약은 체결되었지만 아직批准이 되지 아니했고, 게다가 서울에 미국공사관조차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임오군란 발발 당시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개입은 없었다.

조미조약 체결로 朝鮮開港을 성취시킨 슈펠트(Robert W. Shufeldt, 薛斐爾)는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최후의 鎮國 조선왕국을 서구 문명권으로 끌어들이는 위업을 달성하는데 우리 미국이 개척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¹⁾라고 조선개항의 위업을 성취한데 대해 자긍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슈펠트의 조선개항위업과 일본개항을 성취시킨 페리(M. C. Perry)의 공로간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자를 대비 분석해 보면 슈펠트의 조선개항이 역사적 의의가 더 크다는 것을 다음 두 가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페리는 1853~54년 2년간 일본원정 끝에 일본 개항을 성취시킨 반면 슈펠트는 1867년 1월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 사전 탐문항행으로 조선을 처음 방문했을 때 조선개항계획을 수립, 그로부터 장장 15년간 교섭 끝에 조선개항을 성취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페리는 미국의 전통적인 砲艦外交(Gunboat Diplomacy)에 의해 美日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다. 비록 단 한 발의 포탄을 허비하지 않고 평화리에 美日條約을 체결했지만, 페리는 일본원정시 군함 7척 수해병 1천여명의 대병력을 이끌고, 일본 德川幕府에 바칠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고 江戶灣에 입항하여 대대적인 해군함정의 무력적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적 포함외교에 의해 미일조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슈펠트는 비무장 군함 1척을 이끌고 선물준비없이 단신 조선을 방문, 무력적 시위없이 평화적 교섭에 의해 조선개항을 성취시킨 것이다.

임오군란 당시의 미국의 대한정책은 통상무역 팽창주의 정책 구현을 위한 슈펠트의 조선개항정신, 즉 조선독립정책이 기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조청 양국이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추구해보고자 한다.

1. 美清交涉과 朝美條約 締結

조미조약은 조미 양국대표가 이마를 맞대고 교섭·협의한 결과 체결된 조약은 아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슈펠트와 청의 대한정책의 최고

1) Frederick C. Drake, *The Empire of the Seas: A Biography of Rear Admiral Shutlefeldt, US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4), p. 298.

책임자인 李鴻章간의 양자 교섭에서 이룩된 조약이다. 슈펠트는 1882년 1월 19일 조선派遣美國全權特使에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이홍장과 교涉을 벌이게 되었다. 슈펠트가 이홍장과 교섭을 전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냐 아니면 독립국이냐 하는 문제였다. 슈펠트는 조선은 비록 중국의 朝貢國이지만, 염연한 자주독립국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홍장은 조선은 청의 속국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홍장은 그 당시 領選使 金允植과 슈펠트간의 직접 교섭조차 봉쇄한 채 슈펠트에게 屬邦論을 주장한 것이다.

조선이 청의 속국이 아니고 독립국이라는 사실은 다음 두 경우에서 청 당국이 이미 인정한 바 있다. 첫번째가 제너럴 셔먼호사건 때이다.

1866년 8월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에서 도발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평양군민에 의해 선체는 燒破되고 선원 24명이 전원 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보고를 받은 윌리엄스(Samuel W. Williams) 대리공사는 “조선에 간 셔먼호 승무원의 생사여부를 모른다. 만약 생존자가 있으면 송환해 주기 바란다.”²⁾라고 總理衙門에 設法救出을 요구하는 조회문을 보낸 결과, 총리아문은 조청간의 조공관계는 儀禮的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對朝鮮管轄權(all jurisdiction) 행사를 거부했던 것이다.³⁾ 이어 벌링게임(Anson Burlingame) 주청미국공사도 청은 조선의 宗主國이므로 셔먼호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식 요구하자 總理衙門은 다음과 같이 공식 성명하고 있다. “조선은 중국에 臣服하고 있지만 일체의 政教禁令은 自主自行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이 이에 간여할 수 없다”⁴⁾라고 조선은 청의 조공국이지만 사실상 독립국이므로 청이 조선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문제에의 책임을 회피했던 것이다.

2) 『籌辦夷務始末』 卷6, p. 1081, 同治 5년 10월조 : 『同文彙考』(國史編委, 1978), 卷3, p. 2476 〈洋船情形〉; US Diplomatic Correspondence, Williams to The Foreign O #ice, October 23, 1886.

3) US Diplomatic Correspondence, Burlingame to Seward, December 15, 1886.

4) 『清季中日韓關係史料』(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 卷2, pp. 95 - 97, 同治 7년 2월 17일 조.

두번째가 미국 아시아함대의 조선원정 때이다.

미국은 셔먼호사건을 응징하고 포함외교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선을 개항하고자, 1871년 5월 조선원정을 단행했다. 로우(F.F Low) 전권공사가 조선원정을 결행하게 된 이유를 적은 親書를 청국이 대신 조선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자, 총리아문은 앞서 셔먼호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外藩에 대한 불간섭정책을 피력하면서,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므로 조선문제에 간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국정부가 두 차례나 조선의 독립국지위를 인정했으므로, 슈펠트는 이홍장과의 입약교섭을 개시함에 있어서 조선의 완전 자주독립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속방론을 단호히 거부했다.

한편 이홍장의 대한정책의 기본노선은 聯美論을 바탕으로 한 屬邦政策이었다.⁵⁾ 한반도에 미국세력을 끌어들여 미국의 힘을 빌어 일본의 한반도침략을 저지하고, 전통적인 對韓宗主權을 유지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조미조약 체결교섭에서 미국으로부터 속방론 인정을 받아내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조선개항을 성취하게 한다면, 조선과의 主從關係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대한정책의 기본노선은 征韓論 구현이며, 그러므로 청의 속방론 주장을 전면 거부하고 조선독립국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조청간의 전통적인 주종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조선의 자주 독립국지위를 국제법상 공인, 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반도를 정복 지배하겠다는 대한정책을 수립, 드디어 朝日條規를 강제로 체결한 것이다(1876). 일본은 征韓論 具現을 위해 조일조규에 다음 두 가지를 明文化하고 있다. 첫번째는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自主之邦’을 명문화했고, 두번째는 동조약문에 中國年號를 배제하고 조선의 開國年號를 최초로 사용한 것이다. 이로써 조일조규는 국제법상 독립국가간의 조약 체결임을 공식 선언된 셈이다. 그러나 일본이 이같이 조선의 독립국지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5) 宋炳基, 『近代韓中關係史研究』(檀大出版部 1985), pp. 122~134.

공인한 것은 어디까지나 청의 간섭없이 한국을 침략지배하겠다는 저의
가 깔린 政略的인 조약체결임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었다.

슈펠트－이홍장회담은 天津 北洋衙門에서 1882년 3월 25일 제1차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홍장은 속방론을 조미조약 제1조
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고, 슈펠트는 속방론 삽입은 ‘절대불가’라고
단호히 이를 거부했다. 슈펠트는 만약 이홍장이 계속 속방론을 주장할
경우 입약교섭을 중단하고 귀국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에 청국
정부는 만약 속방론을 계속 주장할 경우 회담이 결렬될 위협이 있으므로
타협안으로 4,5차회담에서(4월 14일, 4월 18일) 조미조약 제1조에
屬邦條款을 삭제하는 대신 조약체결 후 조선국왕이 미국 대통령에 보내
는 別途照會文에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라고 명문화하기로 최종 타
결을 본 것이다. 이리하여 속방론이 삭제된 조미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2. 美國의 朝鮮獨立政策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본노선은 조선독립국 공인, 속방론 거부이다.
이는 바로 슈펠트의 조선개항정신이다. 미국은 청·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반도에까지 통상무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통
상무역의 패권을 확립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정책이다.

이에 반해 청의 대한정책의 근본정신은 철저하게도 조선에 대한 종
주권 주장, 속방론 유지정책의 구현이다. 한편 일본은 明治維新이래
정한론을 국가정책으로 수립한 만큼, 조청간의 유대관계를 단절해야만
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장차 한반도를 정복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철
저하게도 조선독립국 공인, 속방론 전면 거부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
처럼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청·일 등 3대열강의 정치적·경제적 국
가이익이 상충되어 있는 가운데 슈펠트는 李鴻章과의 끈질긴 교섭 끝
에 속방론을 철폐하고 조미조약체결을 성사시킨 것이다.

그런데 조미조약체결은 극동 아시아에서의 국제관계에 심각한 정치적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청·일간의 세력균형이 깨어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선의 독립국지위를 승인했다는 것은 곧 일본의 대한정책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은 한반도지배권을 둘러싸고 청·일간의 角逐戰을 유발한 것이다. 조약체결 후 清日戰爭 발발까지는 청의 지배권이 확립되었지만, 미국의 일본 지지에 고무되어 청의 內的弱化와 일본의 外的强大化를 초래하는 始端이 되었던 것이다.

조미조약은 주권독립국가간의 쌍무적 협약이라는 것, 양국간에 평등한 외교관계 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따라서 조·청간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새 출발을 알리는 청신호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미조약체결을 앞두고 새로 부임한 주청미국공사 영(John R. Young)은 청의 속방론 주장이 사실이라면 종속국가 조선과의 조약체결은 무의미하다고 다음과 같이 有權解釋을 요구하는 공한을 프릴링하이젠(F.T. Frelinghuysen) 국무장관에 보냈다.

만약 조선이 독립왕국이라면 우리는 청국과 관계없이 조선국과 직접 입약 교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이 청제국의 속국이라면 우리는 청의 총리 아문과 직접 조선문제(立約問題)를 교섭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문제(속방론)가 의심스러우면, 우리는 통상조약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체결하는 데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⁶⁾

이같은 조선독립국 여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 유권해석 요구를 받은 프릴링하이Zen 국무장관은 조선은 서구의 정치적 견지에서 볼 때 엄연한 독립국이라고 전제하면서,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인은 조선이 行政上 獨立國임을 기정사실

6) *Diplomatic Dispatches from United States Ministers, China* 59, Young to Frelinghuysen, May 1, 1882.

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과거 수년간 여러 차례로 조선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해 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 조약체결로 조선이 새로 독립국이 되었거나 승인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조선을 ‘사실상의 독립국(de facto independence)’으로 간주한다.⁷⁾

이와 같이 미국정부는 조선은 청의 속방이 아니라, 엄연한 자주독립 국임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청의 속방정책을 단호히 물리치고 조선독립국지위를 적극 인정한 슈펠트의 조선개항정신을 국무장관이 이를 공식 지지함으로써, 미국은 이제 청을 통한 간접적인 외교관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대한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슈펠트는 조미조약체결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독립국지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기 위하여 주도면밀한 외교수완을 발휘했다.

첫째로, 슈펠트는 조미조약 조인식때 조선국기를 제정·사용할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이다. 슈펠트는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상징하는 靑龍旗 사용을 배제하고 새로 국기를 제작할 것을 조선전권대관에게 권고하자, 조선 대표는 太極圖形旗를 스와타라호 함상에서 급히 제작, 조인 장소에서 미국 星條旗와 나란히 게양하고 역사적인 조미조약을 체결한 것이다.⁸⁾

둘째로, 조미조약 체결장소는 月尾島와 萱藥島사이에 정박하고 있는 스와타라호를 한눈으로 내려다 볼 수 있는 濟物浦 花島鎮언덕이었다. 이곳에 帳房(임시텐트)을 가설하고 조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7) *Diplomatic Instructions of the Department of State, China, Frelinghuysen to Young, August 4, 1882.*

8) *Schulzeldt Papers : Letters*, “The History of the Treaty with Korea”: 『舊韓國外交文書』(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卷10(美案 1), p. 12, 『往清船問答 初6일(1882. 5. 22)』: p. 14, 「南館別時問答 11일(1882. 5. 27)』.

슈펠트의 권고로 李應浚이 스와타라호 함상에서 급히 太極圖形旗를 제작했는데, 흰 바탕에 太極兩儀를 紅·黑색으로 그려놓고 있다. 이에 마건총은 일본국기와 유사해서 혼동하기 쉬우므로 白底青雲紅龍旗를 국기로 채택할 것을 강권하자, 金宏集은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말았다. 태극도형기 제작사용은 朴泳孝의 태극기 제정보다 4개월 앞서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 제정의 유래와 기원을 재정립하는데 결정적 역사자료가 되고 있다.

슈펠트는 장방에서 청국대표 馬建忠·丁汝昌을 別室로 퇴장시키고, 조선전권대관과 1대 1로 조약체결을 염수했다는 사실이다. 원래 馬建忠陪席下에 조약체결을 염수한다는 것이 李鴻章의 계략이었다. 이는 조청간의 전통적 종속관계를 공인받기 위한 정략적 외교술책인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5월 14일 申櫨大官一行이 威遠號를 예방할 때 조선전권대관을 마건충에게 三跪九叩禮를 행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맞절이 아니고 조선국왕을 대신해서 조선전권대관은 이홍장의 특사 마건충에게 올리는 최고의 예의인 것이다. 이는 조공국이 事大交隣外交의 전통적인 예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마건충은 종주국사신 자격으로 조약체결 장소에 배석한 가운데 조인하려고 계획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슈펠트는 자주독립국가간의 조약체결인 만큼 제3국 대표의 배석은 외교의례상 어긋난다 해서 마건충 일행을 퇴장시킨 가운데 조미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셋째로, 조미조약체결을 염수하고 나서 스와타라호는 조약체결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선국왕과 조선국을 위해 21발의 祝砲를 울렸다는 사실이다. 조미조약은 조선왕국으로서는 구미열강 가운데 미국과의 최초 조약이라는 것, 21발의 예포를 울렸다는 것은 조선왕국이 청의 속국이 아니라 엄연한 자주독립국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축포인 것이다.

넷째로, 조약 비준 후 미국 아더대통령은 푸트(Lucius H. Foote 福德)를 주한미국 특명전권공사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보통 변리공사 정도의 하급공사를 파견하는 관례를 깨고, 청·일 주재미국공사보다 직급이 높은 특명전권공사를 파견, 조선의 주권독립국지위를 공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조선독립국 지위 승인정책은 조미조약 체결로 완전무결하게 완수된 것이다. 그러나 슈펠트－이홍장회담에서 슈펠트는 조미조약 제1조에 속방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조약체결 후 조선국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別途照會(屬邦照會)에 “조선은 본래부터 중국의 속방이나 內治外交는 大朝鮮國君主가 自主하고 있다.”⁹⁾라는 문귀를 명문화하는 데 동의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슈펠트는 오로지 조미조약문에 속방조항의 명문화는 ‘절대불가’를 고수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홍장은 속방조항 삽입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약교섭은 결렬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양측이 일보 양보하는 선에서 이홍장이 속방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미국측은 별도조회문에 속방조항의 명문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된 것이다. 슈펠트가 조약체결 후 별도조회문 작성을 승인하게 된 것은 조약체결 후 조·청간의 從屬關係維持를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立約交涉에 있어서 미국의 對清屈從外交(genuflections)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해 다음 세 가지 정치적 변화를 촉발했다.

첫째, 별도조회문은 청의 對韓屬邦論 주장의 명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개입의 구실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테면 조미조약 체결 후 한 달만인 그해 6월에 마전충은 두번째로 방한, “朝獨條約 체결을 裏助한다”는 구실로 이에 개입했다. 이어 7월에는 임오군란이 발발함에 마전충은 청국군함을 이끌고 세번째로 내한, 군란의 책임을 물어 대원군을 天津으로 납치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미조약 체결 4개월 후에는 마전충은 조선대표를 天津으로 소환, 조청간의 종속적 조약인 朝清商民水陸貿易章程(1882년 10월 3일)을 체결했다. 동조약 전문에, “금번에 체결하는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후의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른 各國과 일체 均霑하는例와는 같지 않다.”¹⁰⁾라고 속방론을 조약전문에 명문화하고 있다. 이로써 청은 이를 대한종주권주장의 법적 근거로 악용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별도조회문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속방론을 명문화하고 부터 청은 본격적으로 대한내정간섭과 종주권강화정책을 추진·강행하

9) 別途照會文原本, National Archives.

10) 「李文忠公全集」(文海出版社, 1965), 卷 5, pp. 330~332, 議朝鮮通商章程, 光緒 8년 8월 29일조.

게 되었다. 이를테면 이홍장은 袁世凱를 朝鮮總理로 파견, 조선 내정을 지도·감시하게 했고, 韓露密約說(1886년 7월)과 관련, 國王廢立陰謀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 미국 위싱턴에 초대주미조선전권공사 朴定陽을 派美하려 하자, 이를 적극 반대했던 것이다.¹¹⁾

셋째로, 청은 속방론에 근거, 임오군란이 발발하자, 이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청군을 서울에 進駐, 대한지배권을 확립했다. 이로써 1894년 청일전쟁 발발까지 약 12년간은 사실상 청의 대한지배기가 된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일간에 각축전을 유발했을 뿐만아니라 결국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清의 屬邦政策

李鴻章은 조미조약 제1조에 속방론을 삭제하는 대신 두 가지 요구조건을 관철했다. 하나는 조약 제1조에 居中調停(good offices, 從中善爲調處)을 명문화했고, 두번째가 바로 조약체결 후 別途照會文에 속방론을 명문화하는 것이었다. 거중조정조항은 이홍장이 삽입한 것인데, 그 목적은 미국의 힘을 빌어 일본의 대한침략을 저지함으로써 대한 종주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그의 聯美論에 그 바탕을 둔 조항이었다. 슈펠트는 속방론을 조약문에 삭제할 것만 고집했을 뿐, 이홍장이 마련한 제2호 및 제4호 條約草案을 그대로 양해·승인했는데, 조미조약 제1조에 “만약 타국이 조선에 대해 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피차 萬國公法에 비추어보아 본 조약 규례에 따라 서로 원조하고 거중조정역을 다함으로써 영구히 안전을 보장한다.”¹²⁾라고 되어 있다. 미국이 거중조정조항을 승인한 것은 미국의 도덕적 우월권을 앞세운 순진한 외교로 간주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의 책무가 법률적 견지에서

11) 金源模, 〈袁世凱의 韓半島安保策(1886)〉『東洋學』(1986), pp. 227~261; 「朴定陽의 對美自主外交와 常駐公使館開設」, 「藍史 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1984, pp. 361~396.

미국이 거중조정의 감시자로서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은 한반도의 安保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미·청 양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공동책임질 것을 공약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를 폐기, 일본의 한국침략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李鴻章은 對韓屬邦政策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전충을 특파했는데, 그는 조약체결 일주일전인 5월 15일에 威遠號에서 조선대표로 하여금 別途照會文을 작성해서, 조약체결 2일 후인 5월 24일 조선대표가 스와타라호를 방문, 슈펠트에게 이를 手交하게 했다. 그런데 원래 슈펠트—이홍장간에는 조약체결 후 조선정부가 별도조회문을 작성한 후, 이를 미국대표에 수교하기로 합의 양해한 것인데, 마전충은 이같은 당초의 약속을 깨트리고 5월 15일자(음 3월 28일) 별도조회문을 작성한 것이다. 슈펠트는 漢文으로 된 별도조회문을 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다. “별도조회문은 이홍장과의 사이에 양해된 것으로 조약 조인 후에 작성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이를 설명하는 적당한 통역이 없어서 본인이 조선을 떠날 때까지 ‘사전작성’ 사실을 몰랐다.”¹³⁾라고 언명하고 있다.

조약체결 전에 별도조회문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미·청 양국은 각기 정치적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우선 청국측은 조선이 청의 藩服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미국대표가 인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조약체결 전에 미국이 별도조회문 작성을 허락한 것은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¹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대표는 조선의 屬邦地位를 인정하고 조미조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와 정반대의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국왕이 조약체결 전에 별도조회문에서 청의 藩服을

12) 제 2 호 條約草案(李鴻章) 英·漢文本; 제 4 호 條約草案(李鴻章) 漢文本.

13) Shufeldt Papers : Letters, Shufeldt to Frelinghuysen, August 23, 1882.

14) 「適可齋紀言紀行」(文海出版社, 1896) 卷4, p. 352, 〈東行初錄〉 4월 초4일조: 「關係史料」卷2, p. 621.

인정했으므로 이제 조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은 번복의 지위로부터 벗어나 완전 자주독립국가가 되어 미국과 동등한 국가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복의 이름은 조미 양국간의 평등한 국가관계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¹⁵⁾라고 선언했다.

馬建忠은 조미조약과 별도조회문에 조선개국연호와 光緒年號를 병기하도록 솔책을 꾸민 것이다. 가령 조일조규에는 조선측은 開國年號와 干支를 사용했고 일본측은 紀元年號와 明治年號를 사용함으로써 광서연호 사용을 적극 배제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朝鮮報聘使 閔泳翊이 미국 아더(Chester A. Arthur) 대통령에게 제정한 조선국서에도 “開國四百九十二年六月十二日”(1883년 7월 16일)이라 개국연호만 사용했고, 중국연호 사용을 배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건충은 중국연호를 병기함으로써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임오군란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은 한마디로 조선독립국유지정책이었다. 그러면 당사국인 조선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본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의 자주독립을 국제법상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여전히 조공체제를 바탕으로 한 청에 대한 孝道關係(a filial relationship)를 단절하지 못하고, 종속관계유지, 對清依存政策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조선독립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대청의존의 고정관념은 변함이 없었다.

드디어 조미조약체결 2개월만에 임오군란이 발발했다. 군란 당시 天津에 머물고 있었던 영선사 김윤식은 즉각 청국정부에 “扶護調停을 主持해줄 것”을 청하면서 육군 1천명을 급파, 사태수습을 요청했다. 한편 問議官 魚允中도 周馥과의 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請兵했다.

周 : 나와 같이 北洋巡洋兵艦을 통승, 義州에 가서 조선의 정형을 탐문해 보는 것이 좋겠다.

魚 : 의주는 우리나라 변방이므로 사정을 자세히 탐문하기가 어렵다. 仁川으로 직항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陵勇 1천명을 동원 기회에 따라 조선을 구원해 주기 바란다.¹⁶⁾

15) 위의 책.

한편 주일청국공사 黎庶昌도 일본의 출병사실을 알리면서 署理北洋大臣 張樹聲에게 清의 출병을 강력히 전의했다. 이리하여 청·일 양군의 출병이 단행되었는데 그 결과 수천 명의 외국군대가 서울에 진주하게 되었다.¹⁷⁾

임오군란은 軍料紛爭으로 발단된 일종의 불만군인의 폭동반란인데, 그 규모를 보면 宣惠廳堂上 閔謙鎬·京畿觀察使 金輔鉉·領敦寧府使 李最應 등 3명, 군사교관 堀本禮造 등 일본군인 수삼 명이 살해되고, 일본공사관이 불타고 閔中殿이 長湖院으로 피난가는 등, 폭동규모를 아무리 따져 보더라도 지역적인 한 작은 돌발사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조선정부는 이같이 소규모의 폭동마저 진압할 여력이 없었는지, 성급하게 청에 청병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는 바로 조선지도자가 대청의존 고정관념을 고수했을 뿐만아니라 청의 속방정책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에 대한 청병은, 청·일 양군의 출병을 가져왔고, 따라서 청일 양군의 서울진주로 청일간의 각축전이 발생할 素地가 마련된 것이다. 조선정부는 이같이 자체의 힘에 의해 군란을 진압할 방도를 강구하지 않고 청병으로 외세개입을 자초하고 말았다. 그 결과 가까이는 2년 후 甲申政變(1884년 12월 4일), 멀리는 清日戰爭(1894년) 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맺 음 말

임오군란을 전후한 시기는 미국이 조미조약을 체결, 명실상부한 조

16) 『從政年表』(國史編委, 1971), p.136, 高宗 19년 6월 19일조; 『陰晴史』(國史編委, 1971), 下, pp.178~179, 〈海關署談草〉(高宗 19년 6월 27일조).

17) 임오군란 당시 청일양군의 출병규모를 보면, 일본군은 金剛(350), 天城(250) 日進(250) 등 군합 3척 총병력 850명이고, 군란 준비금은 17만원이다. 청군은 일본신문에서 는 1만5천명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군합 威勇·超勇·揚威 등 5척과 水陸軍 4천명 정도가 아닌가 추산된다. 『明治編年史』(財政經濟學會, 1935), 卷5, pp.118, 119, 131, 146; 『從政年表』, p.137, 高宗 19년 7월 7일 조.

선개항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본노선은 청의 속방론을 적극 배제하고, 철두철미 조선의 독립국승인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가령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상징하는 靑龍旗를 버리고 太極圖形旗를 제작해서 조미조약 조인식 때 성조기와 나란히 게양하고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 조인식장에서 馬建忠·丁汝昌 등 청국대표의陪席을 거부하고, 이들을 퇴장시킨 가운데, 조·미 양국대표가 1대1로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 그리고 조약체결 후 스와타라호는 21발의 祝砲를 발사하는 등 조선의 완전자주독립국임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이다.

이에 반해서 청의 대한정책의 기본노선은 시종일관 속방정책의 구현이었다. 비록 미국의 반대로 조미조약 제1조에 속방조항을 명문화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조선은 본래부터 중국의 속방이다.”라는 대한종주권觀念만은 고정불변이었다. 李鴻章의 이같은 속방정책은 슈펠트의 조선개항정신에 정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미조약 정신을 스스로 破棄하는 처사이다. 슈펠트 – 이홍장회담에서 조미조약 제1조에 속방론을 삭제하는 대신 조약체결 후 조선국왕이 미국대통령에 보내는 別途照會文에 속방론을 명문화하기로 최종타결한 것이다. 그런데 마건총이 조선대표로 하여금 조약체결 1주일 전인 5월 15일자로 별도조회문을 작성하게 했다. 마건총은 조약체결 전에 별도조회문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인정하고 조미조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청간의 종속관계를 강조했다.

사실상 미국이 조약체결 후 별도조회문에서 속방론 명문화를 인정한 것은 청에게 속방론주장의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이를테면 실제로 조약체결 후 마건총은 朝獨條約체결을 양조한다는 구실로 이에 관여했고, 임오군란 발발때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여 대원군을 납치했으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1조에 속방론을 명문화해서, 대한내정간섭을 통해 대한종주권을 강화했던 것이다.

임오군란은 조미조약체결 2개월만에 발생한 군인폭동사건이었다. 조미간 비준문서를 교환하지 못한 상태여서 미국이 직접 조선문제에 개

입할 처지는 아니었다. 조미조약은 조선이 최초로 구미열강 가운데 미국과 체결한 조약이라는 것, 국제공법상 독립국가간의 조약체결이라는 것, 조선은 종래의 조청간의 종속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신생자주독립국이 되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조약이라는 점에서 조약체결의 역사적 의의는 실로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슈펠트의 조선독립국승인정책을 준수하지 못하고, 對清依存政策을 고수하면서 청의 속방정책에 순종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이같은 조선지도자의 대청의존관념은 조미조약 체결과는 관계없이 고정불변이었다. 임오군란은 지역적인 소규모의 폭동사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이를 자체의 힘에 의해 진압 수습할 방도를 강구하지 않고, 자진해서 청에 청병함으로써 외세개입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오군란 → 청병 → 청·일 양군 출병(외세개입) → 서울진주 → 청일 각축이라는 역사발전의 등식이 성립된다. 이로 인해 가까이는 갑신정변, 멀리는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오군란을 진압한다는 구실로 서울을 점령한 청군은 마침내 대원군을 납치해 갔다. 이는 엄연한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이로부터 대한내정간섭이 개시된 것이다. 갑신정변 이후 袁世凱가 朝鮮總理로 부임한 이후부터는 청의 대한종주권이 확립되어 청일전쟁까지는 사실상 청의 대한지배기였다. 임오군란 발발 당시는 조미조약 비준이 안된 상태라 미국의 공식적인 개입은 없었다. 그러나 1883년 5월 비준서가 교환되고, 주한 미국공사관이 개설되면서부터 미국은 대한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는 청의 대한종주권 주장은 슈펠트의 조선개항정책(조선독립정책)에 위배된다고 공박하면서 對清嫌惡感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反清親日政策으로 전환, '조선의 절대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대한정책에 동조함으로써 결국 미국은 간접적으로 일본의 대한침략정책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